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차이나는 무배당 ABL저축보험

나. 보험의 종류:

	보험 형태	
1형	적립형	
2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10년 이율확정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가. 적립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년 만기	전기납	만15세 ~ 75세	월납
10년 만기			

나. 거치형

보험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년 이율확정형	5년 만기	일시납	만15세 ~ 80세	일시납
10년 이율확정형	10년 만기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통화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통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통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국의 통화로 한다.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CNY ¥ 3,000 이상으로 한다.

(2) 거치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CNY ¥ 120,000 이상으로 한다.

(CNY(Chinese Yuan) : 위안화, 중국 화폐 단위)

나. 추가납입보험료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1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ext{공시이율(\%)} = \text{기준금리1} - 0.4\%$$

(주1) 기준금리1 : 중국인민은행이 인터넷(<http://www.pbc.gov.cn>)을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CGB Yield Curve의 3년 수익률로 하고, 매월 1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 3, 4번째 영업일(3일)의 평균 기준금리로 한다. (CGB Yield Curve : ChinaBond Government Bond Yield Curve)

(주2)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정한다. 다만, 공시되는 기준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된 값을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

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1.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2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보험형태	이율확정기간
5년 이율확정형	5년
10년 이율확정형	10년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ext{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text{기준금리2} - 0.4\%$$

(주1) 기준금리2 : 중국인민은행이 인터넷(<http://www.pbc.gov.cn>)을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CGB Yield Curve의 5년(5년 이율확정형), 10년(10년 이율확정형) 수익률로 하고, 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 3, 4번째 영업일(3일)의 평균 기준금리로 한다. (CGB Yield Curve :ChinaBond Government Bond Yield Curve)

(주2)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한다. 다만, 공시되는 기준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된 값을 적용한다.

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로 하며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복리 0.5%로 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 + 0.4\%} \right\}^{\frac{\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사. ‘가’ 또는 ‘나’ 호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4% 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는 별도로 회사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

아. 세부적인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및 종류

이 보험계약 중 다음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각각 별도의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

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1) 적립형 : 1형 적립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2) 거치형 : 2형 거치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1) 회사는 해당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채, 회사채, 구조화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호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4) '1)' 내지 '3)' 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3)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3.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로 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3)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단,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위험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 항 및 ‘나’ 항에 따라 자금이체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 이율로 한다.

15. 원화환산납입 옵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화환산납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한다)로 한다.

나. 이 옵션은 계약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1형의 경우 제1회 기본보험료, 2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중국의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환산기준일

- 1) 중국의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일”이라 한다)이라 한다.
- 2) 환산기준일은 청약일의 직전 영업일로 한다.
- 3)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한다)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

라. 원화환산율

- 1)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한다.
- 2)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마. 회사는 이 옵션이 부가된 계약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나’ 호에서 납입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준다. 또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원화로 지급한다.

- 1) 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른 거절
- 2) 약관 제19조(청약의 철회)에 따른 청약철회
- 3) 약관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른 계약의 취소

바.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옵션의 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다.

16. 기타

가.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 [납입기간, 10년]
- (2) 거치형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5%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바.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예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